

안전인증소식

[Q&A]

전기용품 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 등이 신규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 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재개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Q Question 전기용품안전인증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자체검사 여부

2009년1월부터 KC마크로 바뀐 안전인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사가 일본 공장에서 생산하는 스캐너는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공장심사가 면제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체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는 2008년 이전 법령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자율안전확인대상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자체검사와 그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 알려주시고,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근거 법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nswer '09.1월부터 시행중에 있는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제도는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 기관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원자재·공정검사와 제품시험 등의 품질관리 방법과 절차는 해당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제도이므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율안전대상전기용품

에 대한 자체검사와 관련된 서류비치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 등을 위해 자체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시기를 권고합니다.

Question 냉풍 매트와 전기용품안전인증 관련

당사 제품은 냉풍기 쿨매트로 전기안전인증을 매트와 함께 받은 제품이 아니라 매트자체에 송풍장치를 제작 및 삽입하였으며, 전기는 직류전원장치(기존인증서 있는 상태임)를 조절기와 결합한 상품입니다. 여름에 바닥을 시원하게 만드는 여름 상품으로 매트와 함께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받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면 매트 제품은 KPS인증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매트리스 제품의 기준을 확인해 보니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귀하께서, 문의하신 냉풍매트는 전기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별표 1의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 세부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인증 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제품에 전원을 공급하는 직류전원장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운용요령 별표 1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범위에 해당되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임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LED가로등기구의 KS규정관련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조도기준부분은 KSA 3701의 도로조명에서 적용되는 부분관련입니다. LED가로등기구는 KS규격인 KS C 7658 의 제정 사항에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부분은 충분히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도로의 조명시설 및 시공의 설계시 전기사업법 과 전기공사법,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KS C(전기부분)의 기준으로 KS 규격에 맞는 가로등기구와 가로등기구에 사용될 램프, 안정기 등을 사용하고, 이러한 제품들을 KS A 3701 도로조명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 설치하면 되는데, 아직 LED조명이 일반조명에 비해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LED가로등기구만이 KS도로조명규격에 맞는 KS도로조명기구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Answer 이전에는 램프가 없는 등기구나 램프만의 규격뿐이었는데 LED가로등기구는 램프가 포함된 등기구이어서 등기구의 성능인 도로 바닥면의 조도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KS는 기본적인 안전 및 성능 규격이고 강제규격이 아니며, 사용자측에서 도로조명의 설계를 필요로 할지는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직 LED조명이 일반조명에 비해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지 못하므로 여러가지 성능을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